

#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1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2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12.18.(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上程, 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교통행정과장 정석환 )

### 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주차장법(2000.1.28공포, 7.29시행)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의 산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(안 제4조1항)

- ▷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=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×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
- ▷무상사용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=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(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) ÷ 총주차구획수
- ▷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
- ▷건축비는 주차장건설 소요건축비원칙이며 1년이상경과경우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

-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(안 제4조2항)

- ▷부설주차장 설치비용 =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1면당 설치비용 × 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
- ▷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 =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 ×주차구

획 1면당 면적

▷토지가액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동일함

▷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㎡로하되(총주차대수규모 8대이하 경우 12㎡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**

- 본조례제정전은 지난 2000. 1. 28일 법률제6234호로 공포되고 동년 7. 29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시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규정되어 있고, 타구에서도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하고자함이 전반적인 추세임으로 조례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비용, 토지가액, 건축비, 주차구획1면의 면적을 산정하는등 기준설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하구보통 가용홍보매체를 통한 대민홍보가 선행되어야할것임
- 또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수 있다고 규정한 주차장법제19조제7항의 단서규정은 추후 조례시행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감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 요 지 : 생략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